

2025학년도 학생생활규정



수 리 고 등 학 교

학생생활규정

제1장 총칙	· 1
제2장 교내생활	· 3
제3장 교외생활	· 5
제4장 두발·복장 규정	· 5
제5장 정보통신	· 5
제6장 정보의 권리	· 6
제7장 생활지도의 방식	· 8

학생자치회 및 학급회 규정

제1장 총칙	· 16
제2장 임원	· 17
제3장 학생자치회 회장 · 부회장 선출	· 19
제4장 대의원회	· 21
제5장 학생운영위원회	· 22
제6장 학생지도위원회	· 23
제7장 학급회 규정	· 23

학생생활교육 규정

제1장 총칙	· 27
제2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 28
제3장 학생의 생활교육	· 30
제4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 및 통보	· 36

규정개정심의위원회 · 38

[별첨] 인권 친화적 수리 문화 조성을 위한 회복적(단계별) 학생 생활교육 프로그램	· 42
서식1. 학생 일시 분리 지도 대장	· 45
서식2. 학생 분리물품 보관대장	· 46
서식3. 학생 일시 분리 지도 보고서 및 확인서	· 47
서식4. 학생 분리물품 보관 보고서 및 확인서	· 48

학생생활규정

1997.	3.	3.	시	행
1998.	9.	1.	제 1차	개정
2001.	4.	13.	제 2차	개정
2002.	4.	3.	제 3차	개정
2004.	4.	19.	제 4차	개정
2005.	4.	19.	제 5차	개정
2005.	12.	8.	제 6차	개정
2007.	4.	15.	제 7차	개정
2008.	3.	24.	제 8차	개정
2009.	4.	18.	제 9차	개정
2010.	12.	27.	제 10차	개정
2011.	3.	1.	제 11차	개정
2011.	5.	19.	제 12차	개정
2015.	2.	16.	제 13차	개정
2019.	2.	00.	제 14차	개정
2019.	11.	05.	제 15차	개정
2022.	3.	21.	제 16차	개정
2022.	11.	03.	제 17차	개정
2023.	12.		제 18차	개정
2024.	8.	22.	제 19차	개정
2025.	4.	10.	제 20차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수리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수리고등학교 교육공동체가 규칙을 스스로 결정하는 자유로운 학교문화 속에서 학생의 권리를 존중하고 자신의 행동과 결정에 책임지는 책무성을 배우며,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역량을 증진시켜 균형있는 미래시민으로서 성장하는 것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적용 근거)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규칙), 제18조(학생의 징계),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교육부 고시 제2023-34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경기도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하여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4조(정의)

- ①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 ② “특수교육대상자”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③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 ④ “학생생활지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의 일상적인 생활 전반에 관여하는 지도 행위(이하 “생활지도”라 한다)를 말한다.

제5조(교육 3주체의 책무)

- ①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④ 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하여 시설,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 ⑤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제2장 생활지도의 범위

제6조(생활지도의 범위)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 ① 학업 및 진로: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사용,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 ② 보건 및 안전: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 ③ 인성 및 대인관계: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 ④ 그 밖의 분야: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비행 및 범죄 예방,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3장 교내생활

제7조(기본품행) 학생으로서의 기초 예절과 질서를 지켜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를 만들어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 이용 및 환경)

- ①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하게 사용하며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 ② 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하

여야 한다.

제9조(차별금지)

- ①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성적 등의 사유로 차별받지 않으며, 성적 지향, 다문화가정 등의 소수 학생들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
- ② 학교 구성원이 성별 등의 사유를 이유로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 ③ 학교는 ①, ②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의사 표현의 자유)

- ①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는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학교는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학교 게시판,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11조(학생체벌금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에 의거 체벌을 금하고, 회복적(단계적) 학생생활 교육 프로그램으로 이를 대체한다.

제12조(소지품 검사)

- ① 학생은 부당한 간섭 없이 개인 물품을 소지·관리하는 등 사생활의 자유를 가진다.
- ② 교직원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학생생활지도 등을 위하여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닌 때에는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를 하여서는 안 된다. 교직원이 교육 목적상 필요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학생의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경우 그 검사는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하며, 또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검사를 하여서는 안 된다.
- ③ 교직원은 일기장이나 개인수첩 등 학생의 사적인 기록물을 열람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도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제13조(폭력예방)

- ① 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및 집단 따돌림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에 가담하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 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후를 인지할 경우나 폭력 등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발견한 자는 학교장에게 즉시 신고해야 하며, 이 경우 익명을 사용할 수도 있다.
- ③ 학교 폭력과 관련된 일체의 사안은 별도의 학교 폭력 예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준하여 처리한다.
- ④ 학교 폭력 관련 학생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4조(등교 및 외출)

등교시간은 학교에서 정한 시간으로 하며 그 시간까지 소속 학급에 착석하여야 하며, 외출은 (담임)교사가 발급한 외출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제15조(야간자기주도학습, 방과후)

- ① 학교는 학생에게 야간자기주도학습, 방과후 등을 강제하지 않는다.
- ② 야간자기주도학습, 방과후는 학생의 희망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시행하며 학생의 희망 원, 학부모의 동의서를 반드시 비치한다.

제4장 교외생활

제16조(교외생활)

학생은 교외 생활 중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①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도록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 ②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생, 동급생, 하급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 ③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 ④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 ⑤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 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인솔) 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하여야 한다.
- ⑥ 교통 규칙을 잘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 ⑦ 술, 담배, 본드, 마약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 ⑧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 및 불법 취업을 금한다.

제17조(보호자 의무)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 ① 학생의 외출 및 귀가 시간
- ② 학생의 교우 관계
- ③ 평소와 다른 학생의 이상 행동

제5장 두발·복장 규정

제18조(두발규정)

- ① 학생들의 개성을 존중하도록 하고, 학생들은 항상 단정한 모습을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 ② 두발의 길이는 규제하지 않는다.

제19조(복장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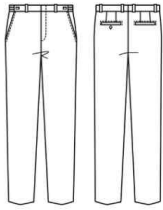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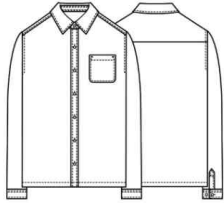



- ① 교복은 ‘편한교복’으로 하며 동복(춘추복), 생활복(후드티, 하복), 활동복을 포함하며 항상 단정하게 입는다.
- ② 동복(춘추복), 생활복(후드티, 하복, 활동복)으로 구분하며 착용 시기는 학생 개인이 계절별 특성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 ③ 교복은 교육 활동의 성격에 따라 종류를 지정하여 착용할 수 있다.
- ④ 동절기에는 교복 위에 겹옷을 착용할 수 있다.
- ⑤ 등·하교 및 교내 생활 복장은 학교가 정한 복장을 자유롭게 혼·착용할 수 있다.
- ⑥ 교복의 종류에 따른 구성은 <표1>과 같다.

<표1> 복장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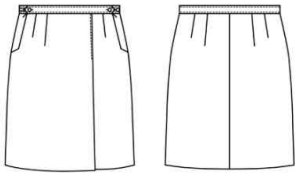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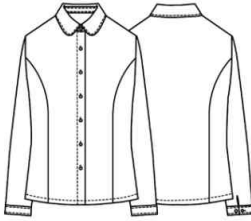



구분		상의	하의
교복	동복	흰색 줄무늬 Y셔츠(블라우스) + 넥타이 +니트조끼 + 자켓	남학생 - 남색 바지 여학생 - 진한 회색 치마 또는 바지
	춘추복	동복에서 자켓을 제외한 복장	동복과 같음
	생활복 (후드티)	남색, 자주색	동복이나 하복 중 자율 착용
	생활복 (하복)	남색 T셔츠 (학교지정체크 포함)	남색 반바지
	활동복 (동복)	남색바탕에 청록색(보라색) 줄 온지퍼	남색바탕에 청록색(보라색) 줄 긴바지
	활동복 (하복)	하늘색 바탕에 남색 줄 반소매	남색 바탕에 하늘색 줄 반바지

<표2> 교복사양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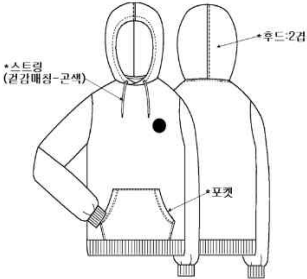
1. 남학생 동복(춘추복)

디자인 및 색상			성유혼용 률
동복	상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머니: 위 1개, 아래 2개 · 뒤 : 절개 · 앞 단추 : 3줄 6개 · 소매 단추 : 각 3개씩 · 색상 : 회색 캐시미어, 더블 · 교표(왼쪽 상의 주머니 위) 	모80% 나일론20% 캐시미어
	하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지 지름 : 무릎 아래 일자. · 뒷주머니에 단추 없음 · 주머니 : 앞뒤 좌우 4개 · 남색 · 허리 조절기능 	폴리에스 테르 + 폴리우레 탄 3%
	상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트라이프 (흰색 바탕/ 하늘색 줄) 	폴리70%+ 레이온30%
	조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브이넥 니트 조끼 · 왼쪽 가슴에 교표 부착 · 남녀 공통 	모 60%+ 폴리40%
	넥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색 · 자동길이 조절장치 必 	폴리100%
	교표 및 단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추: 금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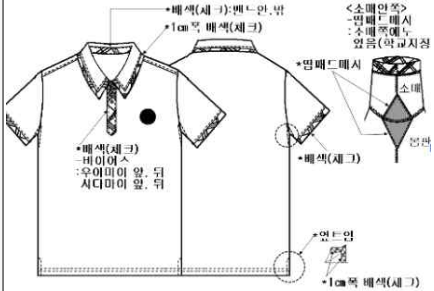

2. 여학생-동복(춘추복)

		디자인 및 색상	섬유혼용률
여	상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리 라인이 들어감 · 앞 단추: 1줄 2개 · 소매 단추 : 각 2개씩 · 주머니 : 위 1개, 아래 2개 · 색상 : 회색 캐시미어, 더블 · 교표(왼쪽 상의 주머니 위) 	모80%+ 폴리20%
	하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쪽 주름 · 길이는 무릎 위까지 · 색상 : 진회색 	모60%+ 폴리40%
	상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트라이프(흰색 바탕/ 하늘색 줄) · 둥근카라 	폴리70%+ 레이온30%
	조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브이넥 니트 조끼 · 왼쪽 가슴에 교표 부착 · 남색 · 남녀 공통 	모 60%+ 폴리40%
	넥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색 · 자동길이 조절장치 必 	폴리100%
	교표 및 단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추: 금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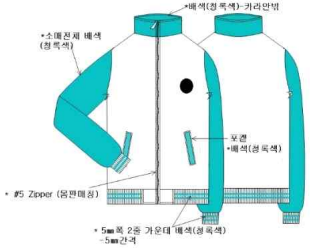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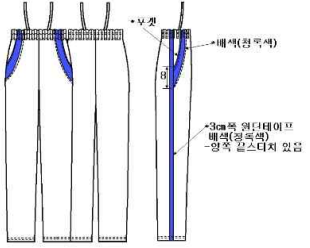
3. 생활복(후드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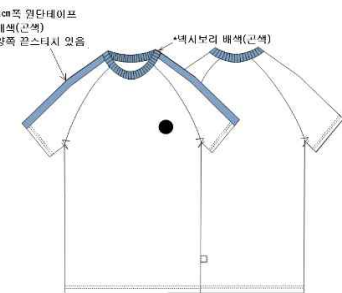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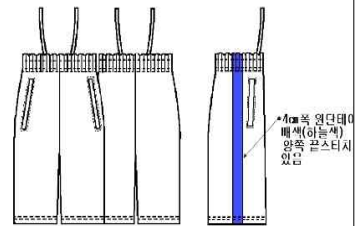
디자인 및 색상		비고(섬유혼용률)
후드티	 <p>·후드끈 (후드티와 동일한 색상, 굵은 스트링 58mm) ·동일색상 시보리 ·색상: 남색/자주색 2종</p>	면담보루 면90% + 폴리에스텔10%

4. 생활복(하복)

디자인 및 색상		섬유혼용률
상의	 <p>· 티셔츠 · 남색 · 소매 깃, 목둘레 체크무늬 · 남녀 공통</p>	폴리에스터 100%
하의	 <p>· 5부 반바지 · 주머니 : 앞뒤 좌우 4개 · 남색 · 허리 조절기능 · 남녀 공통 · 왼쪽 아래 바깥쪽 마크 부착</p>	폴리100% 또는 폴리에스터 93% + 폴리우레탄 7%

5. 생활복(활동복)

		디자인 및 색상	섬유혼용률	
동복	상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겉감: 남색 · 배색: 청록색 또는 보라색 · 시보리 배색: 청록색 또는 보라색 - 남녀 구분 없이 색상 선택 가능 	폴리에스테르 50%+ 면50%
	하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겉감: 남색 · 배색: 청록색 또는 보라색 · 시보리 배색: 청록색 또는 보라색 - 남녀 구분 없이 색상 선택 가능 	폴리에스테르 50%+ 면50%

		디자인 및 색상	섬유혼용률	
하복 ↓ 기 영	상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탕색: 하늘색 · 배색: 남색, · Neck시보리 라운드 스타일 곤색 	폴리에스테르 50%+ 면50%
	하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탕색: 남색 · 배색: 하늘색 · 안감: 메쉬주머니 	폴리에스테르 100%

※ 본교 교복 혼용률은 권장 사항이며 교복 품질 강화를 위한 혼용률의 변동은 인정

제6장 정보의 권리

제20조(사생활 보장)

- ① 학생은 가족, 교우관계, 성적, 징계기록 등 사적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는 학생에 관한 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함에 있어서 적법하고 적정한 수단과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 ③ 학교는 교육비 미납사실 등 학생에 관한 사적 정보를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공개

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 ④ 누구든지 학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개인 정보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함부로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21조(휴대전화 등 통신기기)

- ① 학교 내에서 휴대전화와 전자기기 등의 소지를 제한하지 않고, 학생은 스스로 자율적으로 관리한다.
- ② 평가 기간이나 수업 시간에는 휴대 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③ 학생이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수업 등 교육활동을 방해한 경우, 교사는 해당 학생의 휴대전화를 수거·관리할 수 있다.
- ④ 수업 중 휴대전화를 재차 사용하는 경우, 담임교사가 보호자에게 사실을 알리고 가정에서 올바른 휴대전화 사용법을 지도하도록 안내한다.
- ⑤ 제3항의 지키지 않을 경우 제27조3항 ‘소지금지 물품 보관 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 ⑥ 학생은 타인의 동의 없이 타인의 음성이나 모습을 녹음, 녹화,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정보 열람 및 정정)

- ① 학생은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은 본인에 관한 기록 중 부정확한 내용,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내용, 학생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내용 등에 대하여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 ③ 학교의 장은 학생에 관한 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 ④ 학생생활규정은 누구나 열람 가능하도록 홈페이지에 공지하여 둔다.
- ⑤ 학교의 장은 학생생활규정이 제·개정된 경우 이를 관할 교육지원청에 보고 한 후 개정사항을 학교홈페이지 및 가정통신문 등으로 공지하여야 한다.
- ⑥ 학교의 장은 예·결산 등 학교 재정관련 정보를 학교구성원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과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7장 생활지도의 방식

제23조(조언)

- ① “조언”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 ③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④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해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24조(상담)

- ① “상담”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와 학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체의 소통활동을 말한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상담은 수업 외 시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로전담교사,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장과 보호자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 ④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⑤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⑥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⑦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2.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3. 근무 시간 이외의 상담
- ⑧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기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 ⑨ 보호자가 상담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5조(주의)

- ① “주의”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 및 학칙의 위반 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훈육 또는 훈계를 할 수 있다.
- ⑤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임을 다한 것으로 본다.

제26조(훈육)

- ① “훈육”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지시, 제지, 분리, 소지 물품 조사,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중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조언 또는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특정한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지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금지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 ⑤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 ⑥ 제5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 ⑦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2.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한다.)
 3.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4.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교실 내 및 교실 밖 분리 방법]

생활지도	요건		분리장소(시간)	절차 및 유의점	학습지원
1호 지도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대상 : 수업방해행동 학생 교사가 수업 시간 중 1회 조언, 주의 등의 방식으로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행동을 반복하는 학생		교실 내 다른 좌석 내 앉기	지정된 좌석 및 위치로 이동하도록 지시 ▶10분 동안 분리 후 복귀	해당 좌석 및 위치에서 앉거나 선 상태에서 교사의 지시에 따라 수업 참여
			교실 내 뒤쪽 중앙에 서기 (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 포함)		
2호 지도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	가	1호 또는 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학생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앞문 밖 복도	주의를 준 후 실시, 학생에게 자기 책상과 의자를 준비하게 할 수 있음 ▶수업시간내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나	①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② ‘가’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지정 장소(교강실)로 이동 (수업 종료시 까지)	교사가 교무실에 학생인계 요청 후 ▶교원이 인계하여 학생을 지정 장소로 이동 ▶일지기록(교강실 비치) ▶ 학부모에게 통보(담임)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4호 지도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가	수업시간에 지각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실 등 (점심시간의 경우 20분 내외)	식사에 필요한 최소시간(20분) 보장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나	① 3호 ‘가, 나’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②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교무실로 이동 (50분 이내)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통지함	행동성찰문 등 과제 부여
기타	※지각의 기준은 본교 학업성적관리 지침에 결과는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이며, 수업 시간에 분 이상 미참여 시 결과로 처리할 수 있다. ※ 분리된 학생에 대한 지도는 학교 여건에 따라 시간대별로 교직원이 분담하는 방식등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음				

- ⑧ 학교의 장은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및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

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 ⑨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하는 생활지도를 하였을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7조(물품소지 · 사용제한 및 분리보관)

-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 ② 수업 중 휴대전화의 사용
 1. 학생은 수업 중 휴대전화(정보통신 기능을 가진 휴대용 전자기기 포함)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사전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
 2. 학생이 따라 수업 중 휴대전화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지도 교원에게 구두로 요청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1회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고 있는 물품과 소지 또는 사용이 금지된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 보관할 수 있다.
 1.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2.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3. 학칙에 따라 학생이 소지·사용하는 것이 금지된 물품
 4. 그 외 수업 중 수업진행과 관계 없이 사용하는 물품

[학생 물품 분리 보관 규정]

요건	분리 보관기간	분리 보관장소	분리 방법
1 제27조제3항에 따라 1회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핸드폰 등 전자기기, 수업과 관련 없는 서적)	해당 수업 시간	교실지정장소	· 1회차 : 주의 실시 후 2회부터 분리 보관됨을 알림 · 2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 보관 · 해당교시 후 돌려줌.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예시) 흉기, 라이터, 레이저빔 기기 등	3일 ※휴일을 제외하여 기간을 산정.	학년부 교무실 등	※담당교사의 책무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신고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술, 담배 등			※학교장의 책무 -물품분리보관 일지(서식) 작성 -관리항 보관(학년부 비치) -학부모에게 사안발생과 보관기간을 알림
4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예시) 도색잡지 등			※반환 -기간 경과 후 학부모에게 돌려줌.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학교폭력 등의 사안으로 발생한 증거물은 반환되지 않을 수 있음.

- ④ 학생 물품을 분리 보관하는 생활지도를 하였을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⑤ 학급담당교원(담임교사)은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학급의 생활지도에 관한 세부 사항을 학급생활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에서는 보호자 또는 특수교육교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28조(훈계)

- ① “훈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잘못을 깨닫게 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23조에 따른 조언, 제24조에 따른 상담, 제25조에 따른 주의, 그리고 제26조에 따른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 ③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1.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2. 성찰하는 글쓰기
 3.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

제29조(보상)

- ① “보상”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무형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30조(생활지도 불응시 조치)

- ① 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② 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1. 학생이 교원으로부터 문제행동에 대해 2회 이상 주의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여 교원 또는 다른 학생에 대해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우로 한다)를 입힌 경우
 2.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여 교원이 조언 또는 주의를 주고 분리지도(가정학습을 포함한다)를 함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학생이 교원의 정당한 학생 소지 물품조사 또는 물품분리 보관 지도에 불응하여 교원이 2회 이상 이행을 지시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학생이 교원의 훈계를 통해 부여받은 과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31조(이의제기)

-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제32조(기타 사항)

-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59조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실시, 통합학급의 학생 수 감축, 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에 행동 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부 칙 <제2023-28호, 2023.09.0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칙에 관한 특례)

제8조제4호, 제12조제6항 및 제9항, 제18조에 따라 학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이 학칙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한시적으로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2023년 12월 31일까지(개정 예정) 이 고시에서 위임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학생자치회 및 학급자치회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회는 학생자치 능력을 길러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회의 명칭은 ‘수리고등학교 학생자치회’라 한다.

제3조(회원)

이회의 회원은 수리고등학교 학생으로 한다. 단 휴학 중이거나 생활교육 처분을 받은 학생

은 생활교육 기간 중 회원 자격이 유보된다.

제4조(권리 의무)

학생회의 의결사항은 그 자율성을 보장받으며, 필요에 따라 학교장의 자문과 지도를 구할 수 있다.

- ① 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 및 학교 운영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 및 학생들의 자발적 결사는 학생의 권리와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할 권리를 가진다.
- ③ 학교장과 교사는 학생대표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해야 한다.
- ④ 학교운영위원회는 학생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5조(참정권 보장)

- ① 만 16세 이상의 학생은 「정당법」 등 현행 법률에 따라 정당에 가입할 수 있다.
- ② 학생은 사회적인 사안·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고 활동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다.
- ③ 학생은 타인의 견해를 존중하여야 하며, 자신의 견해를 타인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제6조(지도 기구) 이 회의 건전한 운영 지도를 위하여 교직원으로 구성하는 지도 위원회를 둔다.

제7조(기능)

- ① 이 회의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학예, 체육, 특기 및 취미 신장에 관한 활동
 2. 올바른 학습 풍토 조성에 관한 활동
 3. 학교의 전통, 지역사회 문화유산, 전통문화의 계승 활동
 4. 학생 복지 증진 및 각종 봉사활동
 5. 학교 또는 지역 사회 재난 시 지원 활동
 6. 기타 학칙과 본회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
- ② 이 회의 모든 활동은 학칙과 회칙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제8조(효력정지) 이 회칙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 그 효력이 정지된다.

제2장 임 원

제9조(임원) 이 회의는 다음 임원을 둔다.

- ① 회장 1인
- ② 부회장 2인
- ③ 서기 1인
- ④ 각부의 부장 및 차장 각 1인

⑤ 학년장 (1, 2, 3학년 각 1명)

제10조(부서) 이회는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두고 사무를 관장한다.

- ① 기획운영부:교내외 전반적인 학생자치회 활동 계획을 세워 건전한 학생 교육활동을 이끌어가는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함.
- ② 학습부:면학 분위기 조성 과 학력 신장을 위한 학습자료 제공 업무를 담당함.
- ③ 예·체능부:교내·외 체육대회 및 슬기제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전교 학생들의 체력증진에 대한 업무를 담당함.
- ④ 문예부:학교 문예활동 지원 및 문예와 관련된 클럽활동 부서를 지원함.
- ⑤ 환경봉사부:봉사활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깨끗한 학교환경조성 및 자연보호 활동, 교내 폐휴지 수합 및 분리수거 업무를 담당함.
- ⑥ 도서부:올바른 독서 습관을 정착시키기 위해 책 읽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교내·외 독서백일장, 학교 문고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함.
- ⑦ 동아리부:건전한 청소년 상을 정립하고 학생들의 특기·적성을 신장시키는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 하고 정착시켜 교내의 다양한 동아리 문화를 창조하는 업무를 담당함.
- ⑧ 홍보부:슬기제 행사의 적극적인 주도 및 교내의 진취적인 학교활동을 외부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우수한 신입생 유치에 주도적인 업무를 담당함.
- ⑨ 정보관리부:학교 홈페이지 건전하게 활용하기 운동 전개 및 전교생의 학습력 신장을 위한 인터넷 사이트 정보를 제공해 주는 업무를 주도적으로 담당함.

제11조(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대의원회 의장으로서 활동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부장은 해당 부서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④ 학년장은 학년을 대표하며 통괄한다.

제12조(임원의 선출)

- ① 회장(2학년 재학생), 부회장(2학년 재학생 1명과 1학년 재학생 1명)을 전교생이 직접 비밀 선거로 선출한다.
- ② 각부 부장 및 차장은 학생자치회장이 대의원회의 동의를 얻어 지도위원회에 추천, 이의 심의를 거쳐 선출한다.
- ③ 선거 결과 2학년의 최고 득표자는 학생자치회장이 되고, 부회장은 학생자치회장과 같이 출마한 2학년 1명과 1학년 최고 득표자로 한다.
- ④ 각 학년장은 해당학년 회장 중에 본인의 희망에 의거 회장단이 복수 추천하여 학년별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제13조(임기)

이회의 회원의 임기는 학년 장은 당해 연도 1학기부터 2학기말까 지로 하며 그 외 회의 임원의

임기는 2학기부터 다음 학년도 1학기말까지로 한다. 단, 임기 중 학교 내 봉사 5일 이상의 생활교육을 받을 경우 그 직으로부터 해임되며 임원의 결원 시 1개월 이내 후임자를 선출하고 잔여기간동안 임무를 집행한다.

제3장 학생자치회 회장 · 부회장의 선출

제14조(선거관리위원회)

- ①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은 현 학생자치회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되며 입후보하지 않은 학생자치회 대의원 24명으로 구성한다.
- ② 선거관리위원과 선거사무에 관계하는 자는 정·부회장의 피선거권이 없다.
- ③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선거 공고일부터 선거 종료 시까지로 한다.
- ④ 학교 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
 1. 투표인명부 작성(출석부 사본 또는 명렬표로 대신할 수 있다)
 2. 입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일
 3. 기타 선거와 관련된 일
- ⑤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 명단을 선거 공고 일에 공고해야 한다.

제15조(선거 시기 및 공고)

- ① 매년 1학기 말에 실시한다.
- ② 선거일 10일 전에 공고한다.

제16조(선거권자)

선거공고일 현재 본교 재학 중인 자로 한다.(단 공고일 현재 생활교육 처분 중인 자는 선거권이 없다)

제17조(입후보 자격) 입후보하려는 자는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① 선거공고일 현재 회장은 2학년, 부회장은 1학년 1명과 2학년 1명으로 한다.
- ② 성행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 봉사 정신이 투철한 자

제18조(입후보 등록)

- ① 선거 공고 후 기일 이내에 2학년 회장 후보, 1·2학년 부회장 후보는 구비서류를 갖춰 선관위에 개별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후보자 등록 신청서 1부
 2. 교사 추천서 2부
 3. 추천인명부 1부(선거권자 50명 이상 70명 이내)
 4. 선거 운동원 명부 및 찬조 연설을 명단 1부
- ② 선관위는 입후보자 등록 마감 즉시 후보자의 기호를 추첨하여 등록 공고한다.
- ③ 후보자등록 후 제19조를 위반할 시 그 사유를 명시하여 등록 무효를 공고한다.
- ④ 선거 공고 후 기일 이내에 입후보 등록자가 단독으로 출마할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제19조(선거운동)

- ① 선거 운동 기간은 입후보 등록 공고 후부터 선거전일 18시까지로 한다.
- ② 입후보자 팀별로 10명 이내의 선거 운동원과 1명의 찬조 연설원을 둘 수 있다.
- ③ 선거운동원 및 찬조 연설원의 명단은 학교 선관위에 제출해야 하며 규정된 명찰을 달고 선거운동을 해야 한다.
- ④ 선관위는 후보자 및 선거운동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다.
 1. 선거권 자에게 음식물이나 선물 등 향응을 제공한 경우
 2. 다른 후보를 비방하거나 고의적으로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경우
 3. 규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제20조(벽보)

후보자는 기호, 성명, 사진, 자기소개와 공약 사항 등을 기재한 벽보 10 매 이내(규격은 4절지)를 선관위에 신고 후 지정된 장소에 부착할 수 있다.

제21조(정견발표)

- ① 후보자 및 연설원은 합동 정견 발표와 개인 정견 발표를 할 수 있다.
- ② 합동정견 발표 및 찬조 연설은 선거 기간 중 1회로 한다.
- ③ 개인 정견 발표 및 기타 선거 운동은 수업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22조(투표)

- ① 선거권 자는 평등, 비밀, 직접 선거의 원칙에 따라 투표한다.
- ② 투표는 선관위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실시한다.
- ③ 후보자는 선거 운동원 중 참관인을 3명 이내로 선정하여 공정한 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며 선거 도중 이의가 있을 시 선거관리위원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개표)

- ① 개표는 지정된 장소에서 입후보자, 참관인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 ②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1. 지정된 투표용지나 기표 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란에도 기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두 개 이상의 란에 기표한 것
 4. 어느 란에 기표한 것인지가 불분명한 것

제24조(당선의 결정)

- ① 선관위원장은 개표 결과 최다 득표자를 학생자치회장 당선자로 한다.
- ② 최다 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대의원 대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이상의 참석과, 참석자

의 다수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 ③ 선관위원장은 당선자 결정 후 당선자 명단을 공고한다. 이 때 후보별 득표수와 무효표, 기권표를 각각 공표한다.

제4장 대의원회

제25조(구성)

- ① 대의원회는 학생자치회 전체 임원으로 구성한다.
- ② 학급 회장, 부회장은 학급에서 선출한다.

제26조(기능)

- ① 사업 계획의 심의 및 결과 보고의 승인
- ② 운영위원회에서 부의한 안건의 심의 의결

제27조(회의)

- ① 대의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회는 매월 1회 의장이 소집한다.
- ③ 임시회는 다음의 경우 개최할 수 있다.
 -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재적 대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3.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 4. 학생 지도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 ④ 대의원회 의결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대의원회의 소집은 학생지도 위원회에 신고 후 회의일 1주일 전에 공고한다.

제5장 학생 운영위원회

제28조(구성) 운영위원회는 학생자치회장, 부회장, 서기, 각부의 부장 및 차장으로 구성한다.

제29조(기능)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① 학생자치회의 제반 업무 집행
- ② 대의원회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 ③ 기타 운영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사항

제30조(회의) 운영위원회는 회장 또는 학생지도 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한다.

제6장 학생지도위원회

제31조(구성)

- ① 학생지도위원회는 전교직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학교장, 부위원장은 교감으로 한다.
- ③ 각부 상임 지도 위원은 학생생활안전부장, 체육예술부장, 상담담당교사, 학생생활안전부 학생자치회 지도교사로 구성한다.

제32조(기능)

- ① 학생지도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한다.
 1. 학생자치회 지도 육성에 관한 사항
 2.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3. 학생자치회 임원 임명에 관한 사항
 4. 기타 학생자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전 항의 지도는 사전·사후 지도를 포함한다.

제7장 학급회 규정

제33조(목적)

학급 자치활동을 통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민주시민의 자질을 갖추도록 하며, 합리적인 사고와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고 급우 간의 우애와 단결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4조(구성)

학급회는 학급 학생 전원으로 구성되며, 학급 담임 교사는 본 회의 고문이 된다.

제35조(기구와 임무) 학급회의 기구와 임무는 다음과 같다.

- ① 회장 : 학급을 대표한다.
 1. 학급 회장과 학생자치회 대의원을 겸임한다.
 2. 담임 선생님을 도와 학급에 봉사한다.
 3. 건전한 교풍과 학습 풍토 조성 노력한다.
- ② 부회장 : 담임 선생님과 학급 회장을 도와 학급에 봉사한다.
 1. 건전한 교풍과 학습 풍토 조성 노력한다.
 2. 회장 유고시 임무를 대행한다.
- ③ 각부 부장
 1. 기획부 : 본회의 일체 업무를 계획, 운영
 2. 학습부 : 학급의 자율적 학습 분위기와 교과 학습 준비 및 도서관리와 문예 활동
 3. 예체능부 : 체력 관리 및 체육대회, 신체검사, 예능에 관련된 전반적인 활동 주도
 4. 정보관리부 : 학급 내 컴퓨터 및 홈페이지 관리, 정보 자료 수집 및 보급
 5. 봉사환경부 : 학급의 봉사 활동 주도 및 환경 미화, 쓰레기 분리수거
 6. 서기 : 학급 회의록 기록 및 학급일지 기록
- ④ 부원은 어느 한 부서에 소속되어 활동하여야 한다.

제36조(임원) 학급 임원 구성은 다음과 같다.

- ① 회장 : 1명
- ② 부회장 : 1명
- ③ 각부 부장 : 1명
- ④ 서기 : 1명

제37조(자격) 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 ① 회장 및 부회장
 - 1. 품행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 봉사 정신이 투철한 자
- ② 각부 부장 및 서기
 - 1. 담임교사와 학급 회의의 조정을 거친 학급 자체 기준에 의한다.
 - 2. 학생들의 추천을 받아 담임이 임명한다.

제38조(선출) 학급 임원의 선출은 다음 절차에 의한다.

- ① 회장 및 부회장 : 학급회에서 급우의 추천을 받아 입후보하여 직접선거로 한다.
 - 1. 선거 방법은 보통, 평등, 비밀, 직접 선거로 한다.
 - 2. 회장은 재적 과반수를 얻은 자로 한다. 부회장을 차점자로 한다. 단,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다득표자와 차점자 2명이 재투표를 한다.
- ② 부장 및 서기 : 담임교사와 급우의 추천에 의한다.

제39조(임명) 임명 절차는 다음과 같다.

- ① 학급 회장 및 부회장은 학급 투표에서 선출하여 담임교사의 제청에 의하여 선출한다.
- ② 부장 및 기타 임원 : 학급 회의의 동의를 거쳐 담임이 임명한다.

제40조(임기) 학급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 ①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학기별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유고시 다음 선출자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③ 임기 도중 학교 내 봉사 5일 이상의 생활교육을 받을 경우 그 직으로부터 해임되며 기타 사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 학급 회의의 동의를 거쳐 담임이 그 교체를 학교장에게 품의할 수 있다.

제41조(운영)

학급회 운영은 회장이 사회를 보고, 회장 유고시 부회장이 이를 대행한다.

제42조(학급회의 종류)

- ① 학급회 : 학급 학생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
- ② 임원회 : 회장, 부회장, 각부 부장 및 서기가 참석

제43조(개최 주기)

학급회는 본교 교육 계획에 의거 자치활동 시간에 개최하며 임원회는 필요에 따라 학급 나름

대로 개최한다.

제44조(순서) 학급회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한다.

- ① 개회 선언 ② 국민의례 ③ 의안 보고 및 채택
- ④ 의안 심의(의안 상정, 제안 설명, 토론, 표결) ⑤ 건의 사항
- ⑥ 지도교사 조언 ⑦ 교가 제창 ⑧ 폐회 선언

제45조(안건 처리)

학급 회의에서 결의된 주요 안건 및 건의 사항은 대의원회에 상정하여 추진한다.

제46조(실천 점검)

학급 회의의 결의 사항은 학급의 모든 학생이 실천하며, 실천 여부는 다음 학급 회의에서 확인한다.

제47조(개정절차)

이 규정의 개정에는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학생생활교육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수리고등학교 학생생활교육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학생의 생활교육 사항을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학생이 올바른 행동과 바람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 규칙) 및 제18조(학생의 징계)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및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25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등을 근거로 학교생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제4조(생활교육원칙) 생활교육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 ① 학생의 생활교육은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 ② 학생의 생활교육은 문제 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예방지도에 중점을 둔다.
- ③ 학생의 생활교육은 학생의 잘못된 행위의 경중과 본인 및 타 학생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참작하여 보편타당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 ④ 학생에게 생활교육을 할 때에는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고 가급적 생활교육의 종류는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⑤ 생활교육 중의 학생이라도 학생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평가에는 응하게 할 수 있다. 단, 평가 기간은 생활교육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2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5조(설치)

학생의 생활교육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장 소속으로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제6조(기능)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생활교육에 관한 자료의 조사 분석 및 연구
2. 학생생활교육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
3.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도·조언
4. 학생생활교육에 관한 계몽 및 실제 지도
5. 기타 학생 생활교육에 관한 사항

제7조(구성 및 직무)

- ① 생활교육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교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학생생활지도를 담당하는 부장이 되며, 위원은 아래와 같다.
 - 1. 위원장(교감) :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2. 부위원장(학생생활안전부장)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대행한다.
 - 3. 위원(교무부장, 1,2,3학년부장, 생활지도 담당교사) : 학생생활교육 사항을 심의한다.
 - 4. 간사(생활지도담당교사) : 회의록 작성 및 기록한다.

제8조(임기)

-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운영)

-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생활교육 사안에 대해 교직원회의에 회부할 수 있다.
- ③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안은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제10조(회의소집)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 생활교육 사안과 관련하여 담당 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으로 회의를 소집한다.

제11조(간사)

-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 ② 간사는 학생생활지도를 담당하는 부서 소속 교원 중에서 학교장이 지명한다.

제12조(운영세칙)

- ① 위원회 개최 시, 이를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단, 보호자의 동의를 있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문자 등으로 개최를 통지하고, 통지 사실과 방법, 내용을 기록한다.
-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한다.
- ④ 위원회는 심의 전에 학생 및 그 보호자가 의견을 충분히 진술할 수 있도록 기회와 방법을 마련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심의 결정 시 징계를 병과하여 부과해서는 안된다.
- ⑤ 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은 반드시 위원회 회의록에 기록하여 보관하고, 심의 결과는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 ⑥ 학교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장은 필요한 경우 이유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⑦ 학교장은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조치결정 후 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조치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⑧ 조치결정 통지 시, 학교 내 재심의 신청, 도교육청 징계조정위원회 재심 청구(퇴학의 경우),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방법 및 청구 기간 등을 안내한다.
- ⑨ 학교 내 재심의 신청 횟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회에 한한다.
- ⑩ 학교 내 재심의 신청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치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로 정한다.
- ⑪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학생의 생활교육

제13조(생활교육의 종류)

- ①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학생에 대하여 학교 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퇴학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제14조(생활교육의 방법) 학생 생활교육은 다음 각 항에 준하여 실시한다.

- ① 학생생활교육은 학생의 인권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 1. 학생생활교육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여 인권 친화적 수리 문화 조성을 위한 회복적 학생 생활 교육프로그램으로 지도한다.
 - 2. 학생 사안의 유형, 경중에 따라 담임교사, 교과담당교사, 부장교사, 상담교사, 보건교사 또는 학교장(교감)이 학부모와 상담을 요청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② 학교 내 봉사
 - 1. 1일 2시간 이내로 하며 5일 이내로 한다.
 - 2. 대상 학생의 수업결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 3. 상담·교화와 봉사활동 등을 수행한다.
- ③ 사회봉사
 - 1. 1일 5시간 이내,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되 총 25시간 이내로 실시한다.
 - 2. 해당 기관의 봉사활동 이수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 3. 사회봉사는 학교 외 행정 및 공공기관 등 봉사활동 인정기관에서 실시한다.
- ④ 특별교육
 - 1. 관련 교육기관의 일정에 따르며,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최대 30시간 이내로 일수를 정하여 실시한다.
 - 2. 특별교육 기관은 다음과 같다.

가. 교육감이 지정하거나 위탁한 기관

나. 학교장이 학생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인정한 학교 내외 특별교육 및 다양한 프로그램(금연학교, 약물·마약·환각제·알콜 중독치료·심리치료 및 상담 등) 이수

3.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이수

4. 상담 자원봉사자, 한국청소년상담원, 학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 이수

5. 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가. 부적응학생은 학교장이 추천하여 경기도교육청지정 특별교육이수기관이나 경기도학생교육원에 4박 5일간의 입소를 의무화 할 수 있다.

나. 약물, 마약, 환각제, 알코올 중독자는 학교에서 군포시 보건소와 연계하여 금연침 시술 및 병리적 치료로 학교생활에 적응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다.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교육, 심리치료, 교육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교육을 이수한다.

라. 상담자원봉사자, 사회복지사(social worker) 등과 연계하여 1:1로 상담치료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 교육 이수한다.

마. 생활교육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은 그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하되, 학생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

⑤ 출석정지

1.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시행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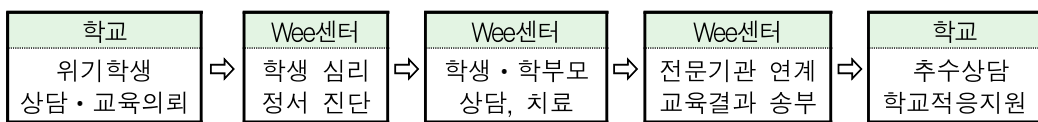
2.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 상황란에 ‘미인정 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 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3. 출석정지 기간 동안 담임교사는 학생과 수시로 대화를 통해 상담을 실시하며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돕는다.

4. 특별교육 이수가 완료되면 업무담당자는 기관으로부터 해당 학생의 교육이수 확인서를 제출받아 기록으로 보존하고, 상담 담당교사(부장)은 상담을 실시하여 학교생활에 적응하도록 돕는다.

5. 출석정지 기간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Wee센터, 대안위탁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상담·치료 등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6. 출석정지 기간에도 학생의 교육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호자와 협의하여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운영하도록 하며, 출석정지 기간에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및 교육 방법을 이용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⑥ 퇴학

1. 퇴학조치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 가.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이 잦은 자
 - 다. 기타 학생생활규정을 위반한 자
2.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 하며, 지역 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3. 퇴학 시 학생 생활교육대장에는 0년 0월 0일 생활교육처분 (00기관으로 전·편입학, 재입학, 입소, 취업 등)이라고 진로상담 결과를 간략히 기재한다.
 4.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학생생활안전부에 방문·접수하여야 한다.
 - 가. 청구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 나. 피청구인
 - 다. 퇴학조치가 있음을 안 날
 - 라. 청구의 취지 및 이유
 5. 학교장은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재심을 청구할 시 2차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열어 심의해야 하며 재차 퇴학처분이 내려진 경우 이에 대해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 ‘사·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을 서면으로 안내한다.

제15조(퇴학처분전 조치)

- ①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반성 및 행동개선을 위하여 10일 이내의 가정학습기간을 부과할 수 있으며, 가정학습 기간은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 ②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 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③ 퇴학 처분을 받은 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2조 및 제74조에 따라 본인이 원할 경우 재입학 또는 편입학 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
- ④ 학교장은 제1항의 가정학습기간 이후 대상 학생이 충분히 반성하고, 행동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퇴학 처분을 철회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학교장의 재심요구) 학교장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이의제기) 징계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가 있음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의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제18조 (재심청구)

- ① 학교장의 징계 처분 중 퇴학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학부모는 퇴학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퇴학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도교육청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징계조정위원회의 심사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 ③ 퇴학처분에 대한 재심청구에 대한 징계조정위원회의 심사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19조(금연 지도)

- ① 금연의 목적 : 학교의 금연지도는 흡연학생은 물론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모든 학생이 건강한 생활 습관을 함양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 ② 금연 지도는 다음 각 호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 1. 학교 내외에서 흡연을 한 학생
 - 2. 흡연 관련 물품(담배, 전자담배, 라이터 등)을 소지한 학생
 - 3. 학교가 출입을 금지한 상습적 흡연 장소를 출입한 학생
 - 4. 학교 내외에서 흡연을 하였다는 제보나 신고의 대상이 된 학생
 - 5. 학교장이 허가하지 않은 금연보조제(전자담배, 금연초 등)를 교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흡연행위와 동일하게 간주하여 금연지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③ 금연지도 대상으로 적발된 학생은 지도교사에게 흡연을 하지 않았음을 항변할 수 있고 흡연 측정기의 사용 등을 통해 흡연하지 않았음을 주장할 수 있다.
- ④ 흡연측정기의 사용 목적에 대한 지도교사의 충분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부 행위 이후 흡연행위와 동일하거나 가중되어 생활교육처분이 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확인서를 받거나 통지하여, 추후 금연지도에 필요한 생활교육 처분을 할 수 있다.
- ⑤ 흡연측정기의 사용은 흡연학생의 생활교육처분 목적(흡연을 하였다는 증거의 수집)으로 사용하기보다는 우선 흡연 관련 행위를 모두 금연 지도 대상으로 규정하거나 간주하고 관련 학생이 흡연하지 않았다는 항변에 대한 확인 수단이나 금연지도를 유도하기 위한 수단(지속적인 금연이 준수되고 있는지의 여부 확인)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 ⑥ 금연 지도 방침
 - 1. 적발 횟수는 재학 기간 중 당해 연도에 적용하여 지도한다.
 - 2. 적발된 학생은 제20조(생활교육의 기준) 제30항에 의거해서 지도하고, 1회 적발부터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분한다.
 - 3. 금연지도 대상 학생들은 군포시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금연프로그램에 주 1회 참가하여 4회 교육을 받는다. (이수증 제출일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4. 적발 후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부되기도 전에 흡연으로 또 적발되면 가중 처벌한다.
 - 5. 지도교사는 흡연 적발 이후 수시로 금연지도 대상 학생의 흡연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여 추후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한다.
 - 6. 모든 교사들이 교내외 지도를 철저히 하고, 조·종례를 통하여 훈화교육을 실시한다.

20조(생활교육의 기준) 학생생활교육 기준은 다음과 같다.

항	내 용	생활교육 기준				
		학교 당시	사회 당시	특별 교육 목적	총선 당시	퇴학
1	불량 서클에 가입하였거나 참석한 학생	○	○	○	○	
2	집단행동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학생	○	○	○	○	○
3	학교장의 허가 없는 행사에 출품, 출연 또는 참가로 학교 명예 훼손 학생	○	○			
4	학생을 선동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한 학생		○	○	○	○
5	지속한 언행 또는 SNS등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학생	○	○	○		
6	타인(선후배, 동급생, 교직원, 학부모, 주민 등)에게 모욕·불손한 언행을 한 학생	○	○	○		
7	언행이 불량하여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	○			
8	공중도덕을 위반한 학생	○				
9	교복 등 용의 및 복장 관련 규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학생	○				
10	수업 준비, 청소, 기타 학생의 의무 이행에 대만한 학생	○				
11	학생생활교육 기간 중 지도에 불응한 학생		○	○	○	○
12	경찰서에 언행된 후 훈방 또는 구속 석방된 학생	○	○	○	○	
13	인장 및 제 증명을 위조한 학생	○	○	○	○	
14	개전의 경이 없이 학교생활에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		○	○	○	○
15	불온문서를 은닉, 탐독, 제작, 게시 또한 유포한 학생		○	○	○	○
16	무면허 운전 및 음주 운전을 한 학생(교내로 자동차 진입 포함)		○	○	○	○
17	오토바이 및 차량을 절취한 학생(교내로 오토바이 진입 포함)		○	○	○	○
18	행법상 유죄로 판결된 학생		○	○	○	
19	인터넷 등 사이버 상에서 범죄 행위를 한 학생		○	○	○	○
20	교육활동 중 교사의 교육권을 방해하거나 타인의 학습권을 침해한 학생	○	○	○	○	○
21	수업을 거부하거나 그 선동에 동조한 학생	○	○			
22	평가기간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방조한 학생	○	○			
23	수업 시간 중 지속해서 소란을 일으키거나 부적절한 언행을 한 학생	○				
24	평가 시간에 휴대 금지된 전자기기를 부정행위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단순 소지와 미제출로 적발된 학생	○	○			
25	평가를 거부하거나 그 선동에 동조한 학생, 백지동맹을 주도하거나 선동한 학생		○	○	○	
26	평가문제 누설 또는 문제지를 절취한 학생		○	○	○	○
27	상대방의 동의 없이 교내에서 사진, 동영상 촬영한 학생	○	○			
28	불건전한 영상물을 제작, 복제, 대어, 회람, 유포한 학생	○	○	○		
29	학교전산망에 침투하여 학교기밀(평가문제, 기안서류, 학적사항 등)을 알아낸 학생			○	○	○
30	미인정으로 지각, 조퇴, 결과 또는 결석을 반복적으로 하는 학생	○	○	○	○	○
31	금연지도의 적용 규정을 위반한 학생	○	○	○	○	
32	교내외에서 술을 소지하거나 음주를 한 학생	○	○	○		
33	본드, 대마초, 환각제나 마약류를 소지하거나 복용한 학생		○	○	○	○
34	도박 등 사행성 행위를 한 학생	○	○	○		
35	학생 출입 금지된 구역 및 장소에 출입한 학생	○	○			
36	외설물을 소지했거나 회람케 한 학생	○				
37	불미스러운 행동, 불법 행위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	○	○	○	○
38	불건전한 이성교제 등으로 풍기를 문란하게 한 학생	○	○	○	○	
39	사행 행위로 남의 금품을 가로챈 학생		○	○	○	○
40	고의로 공공기물이나 타인의 물건을 훼손한 학생	○	○	○	○	○
41	교사(지킴이, 교직원 등)의 훈계를 이유 없이 반복해서 어긴 학생	○	○	○	○	
42	교사(지킴이, 교직원 등)에게 불손하거나 모욕적인 언행을 한 학생		○	○	○	
43	교사(지킴이, 교직원 등)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학생	○	○	○	○	
44	교사(지킴이, 교직원 등)에게 신체적 폭력을 행한 학생				○	○
45	학생 이외의 대상에게 폭력을 행사한 학생	○	○	○	○	
46	무단가출하여 학교와 사회에 물의를 야기한 학생	○	○	○	○	○
47	기본생활습관지도 기준표를 지속적으로 위반한 학생	○	○	○	○	
48	기타 학생의 책임과 의무 규정을 위반한 학생	○	○	○	○	○

제4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 및 통보

제21조(사안설명)

-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생활교육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생활지도업무 담당부장, 해당 학년부장, 생활지도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 ② 학생에게 징계를 가할 시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의견 진술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신 할 수 있다.

제22조(심의절차)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개회
2. 심의과정 설명
3. 사안설명 및 질의·응답 : 담당부서·담당교사의 사안 설명 및 위원 질의·응답
4. 의견청취 및 질의·응답 : 담임·기타 참고인의 의견 청취 및 위원 질의·응답
5. 의견진술 및 질의·응답 : 학생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 선임 가능)의 의견 진술 및 위원 질의·응답
6. 학생, 보호자, 담임, 기타 참고인 퇴장
7.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협의 및 심의·의결 :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결과에 대한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처리
8. 생활교육처분 내용 통보 : 생활교육 의결 결과를 학생 및 보호자에게 통보

제23조(생활교육 내용의 통보)

- ① 학교장은 생활교육조치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생활교육조치의 내용과 이의 제기·재심 절차 및 징계기간 중 유의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 ② 학교장은 대상 학생, 징계 내용 및 결과 등을 공고해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생활교육 학생의 행사 및 고사 응시) 생활교육 중인 학생이라도 각종 행사(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교육과정에 포함된) 및 정기고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단, 이 경우 행사 및 평가기간은 생활교육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25조(결과 처리·열람)

- ① 학생생활교육대장 및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협의록을 기록, 보관한다.
- ② 학생생활교육대장 및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협의록의 열람을 신청하는 자(본인)는 소정의 절차에 따른 학교장의 허락 후 해당 부분만을 열람할 수 있다.

제26조(개정절차) 이 규정의 개정에 관하여는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학생생활규정 개정 절차'에 필요한 세부 사항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학생생활규정'을 제·개정할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준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학생생활규정'이라 함은 본교의 학교규칙 중에서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제4조(위원회 구성)

- ① 본교의 학생생활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 ②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8인 이상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하며, 학생·학부모·교원·전문가 대표가 포함되도록 하고, 학생의 수가 반드시 1/3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되, 교원의 수는 학생의 수와 동일하게 한다.
- ③ 위원회의 교원 대표는 교직원 회의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 중에서 선출한다.
- ④ 위원회의 학생 대표는 지나치게 특정 학년에 치우치지 않게 구성하며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별 상황과 위원회 구성 일정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학생자치회 대의 기구를 통하여 선출할 수 있다.
- ⑤ 위원회의 학부모 대표는 학부모 전체 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다만, 학부모 전체 회의에서 학부모 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 대표로 위촉할 수 있다.
- ⑥ 위원회의 전문가 선출은 학생·학부모·교원 대표로서 선출된 위원들이 추천하여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로 위촉하도록 한다. 이때 전문가는 변호사, 단체 활동가, 대학교수, 사회복지사, 청소년 지도사, 상담사, 퇴직 교원 등을 포함하여 폭넓게 인정할 수 있다.
- ⑦ 위원회의 구성에 앞서 반드시 학생·학부모·교원에게 위원회의 구성 목적과 방법, 일정, 활동 내용에 대해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한다.

제5조(위원회 운영)

-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고, 간사를 두어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한다.
-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졸업 등으로 인하여 새롭게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 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개정안 발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 ①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 ② 재직 교원의 과반수
- ③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 ④ 학생자치회 대표(학생자치회의 의결서 첨부)

제7조(검토 및 의견수렴)

- ①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를 반드시 거친다.

제8조(심의 및 결정)

- ① 위원회는 개정안이 발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민주적 절차를 통해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9조(공포 및 정보 공시) 학교홈페이지 탑재 및 가정통신문을 발송한다.

제10조(연수 및 교육) 개정된 학생생활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제11조(학생생활규정 개정 절차)

절차	내용
개정안 발의	- 규정개정심의위원회, 학생자치회, 교직원회, 학부모회 등에서 학생생활규정 개정안을 발의
↓	
민주적 의견수렴	-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 주관,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 구성원(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수렴
↓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심의	-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과정에 학생 대표가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부여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의 4 참조)
↓	
공표 및 보고	- 학교 구성원들이 개정된 규정을 알 수 있도록 학교 게시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공고 - 학생생활규정의 내용은 학교홈페이지에서 학생과 보호자 등이 알기 쉽게 별도의 팝업으로 공지

제12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협의로 결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인권 친화적 수리 문화 조성을 위한 회복적(단계별) 학생 생활교육 프로그램

1. 목적

기본생활예절을 습관화하여 학생들에게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케 하고 건전한 학교 생활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 학생들의 바람직한 생활 자세와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시킨다.

나. 학생들의 선행과 봉사정신을 적극적으로 함양시키고 바람직한 인성을 형성 시킨다.

다. 작은 선행을 실천하여 더불어 사는 정신을 배양하고 나아가 애교심과 애국심을 기른다.

라. 학생을 지도와 훈육의 대상이 아닌 내면의 변화에 의한 자율적 행동 변화의 주체로 인식한다.

마. 인권 친화적 단계별 학생 생활교육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이 존중받는 참여와 소통, 자율과 책임이 있는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를 조성한다.

2. 기본방침

가. 체험과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을 강화한다.

나. 학생인권 및 교권의 건전한 확립을 통해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을 보호한다.

다.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를 통한 절제와 자정능력을 신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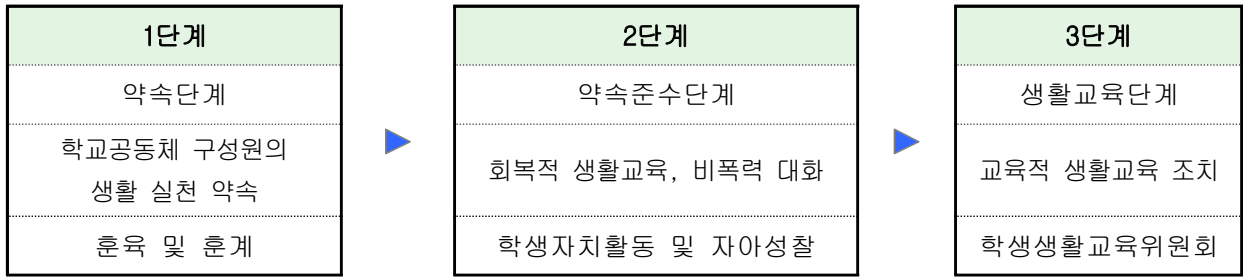
라. 전 교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공정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한다.

마. 학교 구성원 간의 관계 회복을 위한 윤리적 실천 운동을 전개한다.

바. 인권 친화적 단계별 학생 생활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생활교육 방법을 개선한다.

3. 세부추진사항

가. 3단계 인권 친화적 단계별 학생 생활교육을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나. **1단계(약속단계)**는 <표2>의 사항을 위반할 시 훈계 및 훈육을 통해 교사와 학생 상호 간 신뢰를 회복하는 단계로 교사는 위반 횟수를 누가 기록하여 학생지도에 활용한다.

다. **2단계(약속준수단계)**는 지속적인 훈계 및 훈육의 생활교육 방법에도 불구하고 <표2>의 사항을 계속 위반할 시 비폭력 대화를 통해 학생의 회복적 생활교육을 실시하는 단계이다.

라. **3단계 생활교육단계**는 회복적 생활교육, 비폭력대화 실시에도 불구하고 <표2>의 사항을 계속 위반하는 학생에 대해 교육적 생활교육 조치를 통해 학생의 바람직한 인성을 형성시키는 단계이다.

<표2> 기본생활습관 지도 기준표

구분	항목	내 용	횟수	비고
준법 정신	1	등교 지각 또는 수업 지각	1	
	2	조·종례 불참 및 업무(청소 등) 의무 불성실	1	
	3	외출증을 지참하지 않는 등의 무단 외출	1	
	4	복장 규정 미 준수(교복 변형 및 미착용)	1	
	5	색조 화장 및 신체를 훼손시키는 액세서리 착용		
	6	외설물·위험물 소지 및 사용		
	7	학교 컴퓨터 및 기자재의 교육용 목적 외 사용	1	
	8	학생 출입을 금지 장소를 배회하거나 출입하는 경우	1	
	9	정해진 출입문(후문, 월담 등)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1	
	10	학교 단체 활동 및 각종 행사 무단 불참	1	
학습 활동	11	교육활동 중 타인 학습 방해 및 음식물(껌 포함) 섭취	1	
	12	수업 거부 및 수업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	1	
	13	수업 중 통신기구(핸드폰, MP3 등) 사용으로 수업 방해	1	
예절 및 공중 도덕	14	쓰레기 무단 투기 및 침이나 껌을 함부로 뱉는 행위	1	
	15	괴성·질주·공놀이 등으로 실내에서의 소란 행위	1	
	16	실외화, 실내화 미 구분	1	
	17	급식 기구(수저, 식판 등)를 훼손·반출하는 경우	1	
	18	도서대출 장기 연체(누적 적용)	1	
	19	도박, 사행성 오락기구의 교내 소지 및 사용 행위	1	
	20	이성 간 풍기 문란한 행위(불건전한 이성교제)	1	
	21	저속한 언행이나 욕설	1	
	22	학습교재교구·게시물·벽 등을 훼손하거나 낙서하는 경우	1	
기타	23	상기 항목에 속하지 않으나 학생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	1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징계 의결서

제○회 수리고등학교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징계 의결서

성명	학년 / 반	의결 사항		
		징계내용*	징계 수준	비고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징계내용은 학교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 퇴학(의무교육 제외)만 부과할 수 있으며 이를 병과할 수 없음

위 조치의결 사항이 이상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직책	성명	서명(날인)	직책	성명	서명(날인)
위원장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수리고등학교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재심의 조치결정 통지서

수리고등학교 학생생활 교육 규정 제17조, 제18조에 의거 재심의 조치결정을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학생 (조치결정 통보대상)	학교명 수리고등학교	학년반	성명
위반 조항 및 조치결정의 이유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재심의 개최일			
조치결정 내용			
불복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징계처분 중 퇴학의 경우 퇴학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퇴학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경기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2) ◦ 조치결정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는 상위기관에 이의제기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공립학교의 경우 행정심판위원회 청구 또는 행정소송 - 사립학교의 경우는 민사소송 ◦ 행정심판위원회: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음.(「행정심판법」 제27조) ◦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행정소송법」 제20조) 		
(담당자: 〇〇〇, ☎ 000-000-000)			
20 . . .			
수리고등학교장 (직인)			

<서식4>

()학년 학생 일시 분리 지도 대장

수리고등학교 _____ 학년

순서	날짜 (요일)	장소	학번	이름	경 위	인계 받은 교사	보호자 알림 여부	누적 횟수
예시	11.02 (목) 5교시	교실	10100	○○○	수업중 1회 주의에도 수업 방해	○○○	○/×	
1								
2								
3								
4								
5								
6								
7								
8								
9								
10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하는 생활지도를 하였을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서식5>

()학년 학생 분리 물품 보관일지

수리고등학교

순서	날짜 (요일)	장소	학번	이름	경위 (물품명 포함)	지도 교사	반환 예정일	보호자 알림 여부	조치 결과
예시	11.02 (목) 5교시	교실	10100	○○○	수업중 2회 주의에도 휴대폰을 계속 사용 (갤*시노트9 흰색)	○○○	11/7(화)	○/×	반환
1									
2									
3									
4									
5									
6									
7									
8									
9									
10									

1. 경위 내용 예시

- ①수업 중 휴대폰(전자기기 사용)- ‘1회 주의에도 불구하고 ()을 계속 사용’
- ②구매불가물품 (담배,술)- ‘구매불가인 () 소지’
- ③안전을 위한 소지금지물품(흥기,라이터,레이저 빔 등)- ‘소지금지 () 소지’
- ④기타학칙으로 금지되어 있는 물품(도색잡지)

2. 기타

- ①보관 물품은 추후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사진을 찍어두거나 잘 기억해 뒤서 2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함.
- ②반환예정일은 수업일 기준임(휴일제외)

학생 일시 분리 지도 보고서

학년 반 번 학생이름:	
분리유형(✓)	() 3호-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 분리
	() 4호-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 분리
분리일시 및 교시	월 일 교시
장소	
분리경위	
학부모 알림	일시: 20 년 월 일 방법: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하는 생활지도를 하였을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20 년 월 일
작성자 성명 (서명)

수리고등학교장 귀하

제 20 -1-()호

학생 일시 분리 지도 확인서

학년 반 번 학생이름:	
분리일시	20 년 월 일 시간:
장소	
분리경위	

※ 학교의 장은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및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20 년 월 일
수 리 고 등 학 교 장

<서식7>

제 20 -1-()호

학생 분리 물품 보관 보고서

학년 반 번 학생 이름:			
분리 보관 유형(✓)	<input type="checkbox"/> 1호- 수업시간 중 휴대전화 또는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여 1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input type="checkbox"/> 2호-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input type="checkbox"/> 3호- 법령으로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input type="checkbox"/> 4호- 학칙으로 정한 소지 금지 물품(그 외 소지 금지 물품으로 판단되는 물품)		
일시	월 일 시간:		
보관물품명			
보관기간	3일간	반환예정일	20 년 월 일
학부모 알림	일시:		방법:

본 교원은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 12조 9항에 따라,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는 물품 사용으로 해당 물품을 분리보관하였음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작성자 성명 (서명)

수리고등학교장 귀하

※ 학생 물품을 분리 보관하는 생활지도를 하였을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 20 -1-()호

학생 분리물품 보관 확인서

학년 반 번 학생 이름:			
보관물품명			
경위(간략)			
보관기간	3일간	반환예정일	20 년 월 일

-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2조제9항에 따라, 위와 같은 경위로 해당 물품을 분리보관하였음을 통보합니다.
- 분리보관물품 중 타인과 자신의 안전에 해가 되거나 학생에게 금지된 물건 등은 보호자가 직접 물품을 회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보호자가 원할 경우, 해당물품을 반환하지 않고 폐기할 수 있습니다.
- 분리보관 기간(3일)이 경과한 후 다시 3일이 지난 후에는 물품을 자동으로 폐기하며, 해당 기간 이후 학교는 물건 폐기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수리고등학교장